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한 선 미 의원)

의안 번호	25-5
----------	------

발의연월일 : 2025. 2. .

발 의 자 : 한선미, 고병준, 권영숙,
권인순, 김승수, 백남환,
안미자, 오옥자, 이상원,
최은하

1. 제정이유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이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도 의약품을 구입하여 구민의 불편 해소와 긴급히 필요한 의약품의 안전한 제공 및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제2조)
- 나.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시간(안 제3조)
- 다.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라. 공공심야약국 관리 및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안 제5조)

3. 관계법령

- 가. 「약사법」 제21조의3, 제24조
- 나. 「약사법 시행규칙」 제11조의5

4. 조 례 안 : 붙임

5.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

6. 기타사항

가. 입법예고: 2025. 1. 22. ~ 1. 31.

나. 의견제출: 없음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약사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5에서 위임한 사항과 마포구 공공심야약국의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공공심야약국”이란 「약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개설 등록한 약국 중에서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법 제21조의3에 따른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을 판매하는 약국으로 지정한 약국을 말한다.

제3조(공공심야약국의 운영시간)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시간은 「약사법 시행규칙」 제11조의5에 따라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1시까지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따로 정한 3시간 이상으로 한다.

제4조(공공심야약국의 지정 및 지원) ① 구청장은 법 제21조의3에 따라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받으려는 약국개설자의 신청을 받아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공공심야약국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 및 지정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공공심야약국의 관리 및 지정취소 등) ① 공공심야약국 근무 약사는 구청장이 정한 공공심야약국의 근무일과 운영시간을 준수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을 지도·감독할 수 있고, 정기적으로 운영 실태를 조사할 수 있으며, 조사 결과에 따라 법 제21조의3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 해당 공공심야약국에 지급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제6조(홍보) 구청장은 공공심야약국이 활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내 약국 및 구민에게 홍보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약사법

[시행 2024. 12. 20.] [법률 제20592호, 2024. 12. 20., 일부개정]

제21조3(공공심야약국의 지정·운영 등)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을 판매하는 약국(이하 “공공심야약국”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받으려는 약국개설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공공심야약국을 관리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의 운영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공공심야약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원한 예산을 부당하게 집행하거나 목적과 다르게 사용한 경우
 3. 제8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4. 제69조의4제1호의2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⑥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5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 해당 공공심야약국에 지급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

부를 환수할 수 있다.

⑦ 제5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자는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

⑧ 제1항에 따른 공공심야약국 지정의 기준·방법 및 절차, 제2항에 따른 신청 및 제5항에 따른 지정 취소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 4. 18.]

제24조(의무 및 준수 사항) ①약국에서 조제에 종사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는 조제 요구를 받으면 정당한 이유 없이 조제를 거부할 수 없다.

②약국개설자(해당 약국 종사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의료기관 개설자(해당 의료기관의 종사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담합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12. 11.>

1. 약국개설자가 특정 의료기관의 처방전을 가진 자에게 약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여 주는 행위

2. 삭제 <2024. 1. 23.>

3. 의료기관 개설자가 처방전을 가진 자에게 특정 약국에서 조제 받도록 지시하거나 유도하는 행위(환자의 요구에 따라 지역 내 약국들의 명칭·소재지 등을 종합하여 안내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4.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제25조제2항에 따라 의사회 분회 또는 치과의사회 분회가 약사회 분회에 제공한 처방의약품 목록에 포함되어 있는 의약품과 같은 성분의 다른 품목을 반복하여 처방하는 행위(그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한 약사의 행위도 또한 같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와 유사하여 담합의 소지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③제2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조제실에 근무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가 의약품을 조제할 때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협의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3. 3. 23.>

④약사는 의약품을 조제하면 환자 또는 환자보호자에게 필요한 복약지도(服藥指導)를 구두 또는 복약지도서(복약지도에 관한 내용을 환자가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설명한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말한다)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복약지도서의 양식 등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 3. 18.>

⑤보건복지부장관은 약사가 적정한 처방건수를 조제하게 하여 제4항에 따른 복약지도를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개정 2008. 3. 3., 2010. 1. 18.>

약사법 시행규칙

[시행 2025. 1. 1.] [보건복지부령 제1065호, 2024. 10. 18., 일부개정]

제11조의5(공공심야약국의 운영시간) ① 법 제21조의3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심야시간대” 및 법 제21조의3제3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의 운영시간”이란 매일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1시까지를 말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 내 공공심야약국의 효율적·탄력적인 운영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야시간대의 운영시간은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1시까지의 범위에서 3시간 이상으로 정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4. 7. 12.]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조례안 제4조제2항

제4조(공공심야약국의 지정 및 지원)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공공심야약국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2. 비용추계의 전제

- 2025년 국시비 지원 기준: 시간당 40,000원(120,000원/일)에 근거하여 설정
- 2025년 1개소, 2026년 2개소, 2027년부터 3개소 추가 운영 예상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구분	세입						
	○						
	소계(a)						
세출	○ 의료맞이복지비	43,800	87,600	131,400	131,760	131,400	525,960
	○ 사무관리비	2,500	2,500	3,000	3,000	3,000	14,000
	소계(b)	46,300	90,100	134,400	134,760	134,400	539,960
□ 총 비용(a-b)		△46,300	△90,100	△134,400	△134,760	△134,400	△539,960

○ 산출기준: 120,000원/일×365일×1개소 = 43,800,000원

- 1차년도 1개소, 2차년도 2개소, 3차년도~5차년도 3개소(4차년도 366일)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구분	의존						
	재원						
	소계						
	시비보조금						
자체	지방교부세						
	소계	46,300	90,100	134,400	134,760	134,400	539,960
	지방세수입	46,300	90,100	134,400	134,760	134,400	539,960
	세외수입 등						
지방채							
민간자본							
기타							
합계		46,300	90,100	134,400	134,760	134,400	539,960

○ 산출기준: 120,000원/일×365일×1개소 = 43,800,000원

- 1차년도 1개소, 2차년도 2개소, 3차년도~5차년도 3개소(4차년도 366일)

5. 덧붙이는 의견

-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받으려는 약국개설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발생하는 비용으로 예산이 증감될 수 있음
- 국시비 지원 기준 상향 시 예산이 증가될 수 있음

6. 작성자

작성자 이름	보건소 의약과 조영미
연 락 처	02-3153-9131

II.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의료및회복비 지원 기준: 120,000원/일×365일×1개소

통계목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의료 및 회복비	개수	1개소	2개소	3개소	3개소	3개소	
	일수	365	365	365	366	365	
	소요예산	43,800	87,600	131,400	131,760	131,400	525,960
사무 관리비	홍보물	2,500원	2,500원	3,000원	3,000원	3,000원	
	매수	1,000개	1,000개	1,000개	1,000개	1,000개	
	소요예산	2,500	2,500	3,000	3,000	3,000	1,400
계		△46,300	△90,100	△134,400	△134,760	△134,400	△539,960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